우리사주 배당소득 처리시 미배정 주식의 경우 소유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소득처리를 따로 진행할게 있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소득처리한 미배정 주식이 추후 나중에 배정이 되는 경우 어떻게 소득처리 하면 되 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당부분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되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의 소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번에서 판단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조합 소유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고 판단된니다.

또한 조합소유의 미배정주식을 추후 배정하는 경우 다른 조합위들과 마찬가지로 출자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주식에 대한 소유주 처리여부 및 추후 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기관에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 리스

해당 물건을 리스로 판단해도 될지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초 한국캐피탈의 리스계약을 실행하여 취득한 설비를 리스설비로 처리하였으나 1금융권으로 차업 대환하였음

차입대환의 조건은 1금융권으로 설비 양도담보 설정하였고 소유권은 1금융권에 있음(금융거래확인 서 상 담보물건내역에 제외)

양도담보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는 점에서 리스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후리스 거래 로(담보부차입) 판매로 인식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소유권의 이전 여부로만 리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계약관 계 등을 알 수 없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참고하시어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www.eAnSe.com 5  $2021 \cdot 07 \cdot 21$ 

초 보 자 코

## 공장동 내 락커룩 확장 시 자본적지축 여부

- 공장동 내 락카룪과 공구보관실이 있고. 락카룪 확장을 위해 공구보관실과의 벽(샌드위치판넼)을

공장동 내 락커룸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장동 내 락카룸과 공구보관실이 있고, 락카룸 확장을 위해 공구보관실과의 벽(샌드위치판넬)을 허물고 확장을 진행함
- 샌드위치 판넬 철거, 도색 및 바닥 등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
- 금액적으로는 건물의 5% 이상 으로 수익적지출처리 불가 이럴 경우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으로 판단하여 자본적지출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본적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대하여만 반영하는데, 귀사의 공장동 라커룸 확장비용이 해당 공장건물의 본질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대하여만 반영하는데, 귀사의 공장동 라커룸 확장비용이 해당 공장건물의 본질적 내용연수를 연장시 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

##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

해오 용역 가치/ 국내시 해 원회 됩니다. 해외 업체의 기계를 국내의 업체에 소개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업체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10%를 추가하여 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화은행을 통 해 위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입증서류로 제출하면